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 정 2017.6.27. 개 정 2019.1.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회계 감사인의 선임 등) 및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감사인의 선정)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감사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르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감사인"이라 함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법」제23조 에 따른 회계법인을 말한다.
- 2. "회계감사"라 함은 감사인이 공사가 작성한 결산서 등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법 제39조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위원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위원회는 공사 감사와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②위원장 유고시에는 나머지 비상임이사 중에서 다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④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위원회의 최초 소집은 감사가 한다.
- ⑥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6조(의결사항) ①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아닌 자가 대리하여 의결할 수 없다.
-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사인의 심사 및 선정
 - 2. 감사인 변경 및 계약 해지 결정
 - 3.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③위원회는 위 의결사항에 대해서 서면 의결 할 수 있다. 단, 감사인 선정 건에 대해서는 서면 의결 할 수 없다.
- 제7조(회의록 관리)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3호)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게는 비상임이사 이사회 참석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누설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인 선정

- 제10조(감사인 선정 원칙) ①위원회는 공사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감사인의 자격 및 독립성의 준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5조, 제6조를 준용한다.
- ③감사인 선정은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기타 감사인과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계약업무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11조(감사인 선정 절차 및 통보 등) ①감사인 선정은 평가표를 집계하여 입찰 평가항목 합산점수 의 최고득점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선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제1호와 같다.
- ②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감사계약) ①감사원에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한다.
- ②선정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공사는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없다.

제13조(감사인의 변경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변경하거나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감사인(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게을리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 2.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 3. 감사인이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4. 감사인이 직무정지처분을 받아 당해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5. 감사인이 대상기관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 6.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 7. 감사인이 대상기관이 제기 또는 응소한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는 등의 사유로 감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8. 감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감사원 검토 과정에서 감사인이 「공공감사기준」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공인회계 사법」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여 그 조치결과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9. 감사인이 제9조 제2항에 따른 독립성에 위배되거나 기타 이 지침 등을 위반하여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 감사인이 기타 사유로 공사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과 재선정 계획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7.6.27 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선임된 감사인(2018년도분 회계감사 종료시점 까지)은 이 지침에 따라 효력이 있으며 그 운영방법은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1.17. 부터 시행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세부평가요소			
	최근 3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회계감사 실적	10 (계량평가)	기관·회사별 감사수행 실적당 1점 부여(10건 이상 시 10점 부여)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계량평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어 따름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위법행위 조치받은 실적 * 위법행위 조치 사항 - 감사업무제한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10 (계량평가)	0건 3건 미만 미만 미만 이상 10 8 6 4 2			
기술 능력 평가 (80)	사업 참여인력 구성 및 경력	10 (계량평가)	· 투입인원수(책임자 제외) 4인 3인 2인 1인 이상 5 4 3 2 · 책임자경력 15년 이상 이상 이상 이망 이망 5 4 3 2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감사수행 중점사항 - 진행 일정에 따른 인력투입 규모, 계획 등 - 참여인력 전문성(자격 및 이력 등) 등 - 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 회계감사 진행 방법론(감시수행 단계별 진행계획의 구체적 제시여부 및 적정성)	20 (비계량 평가)	때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8 16 14 12			
	부가서비스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재무적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권고계획 - 해외사업 등 신규분야 회계프로세스, 내부통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및 회계·세무관련 지도교육 등 부가 서비스 제공 방안	20 (비계량 평가)	때우 우수 보통 미흡 매우 우수 18 16 14 12			
입찰가격 평가(20)		20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기준에 따름			
	합 계	100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다음장 참조)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 사 채	기업 어음	기 업 신 용 평 가	배 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8.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8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7.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7
BBB-	А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5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
BB-	В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5.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5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조달청신용평가등급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2.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1호]

회계감사인선임관련 제안서 평가표

사업자명		평가일자 : 20	
평가점수	평가위원		(서명)

평 가 항 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평	점
[1] 최근 3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 회계감사 실적	10	계량평가						
②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10		계량평가					
③ 최근 3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 위법 행위 조치받은 실적	10		계량평가					
④ 사업 참여인력 구성 및 경력	10		계	량평	가			
5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 감사수행 중점사항 - 진행 일정에 따른 인력투입 규모, 계획 등 - 참여인력 전문성(자격 및 이력 등) 등 - 수행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 회계감사 진행 방법론(감사수행 단계별 진행계획의 구체적 제시여부 및 적정성)	20	20	18	16	14	12		
6 부가서비스 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재무적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권고계획 - 해외사업 등 신규분야 회계프로세스, 내부 통제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 및 회계·세무관련 지도교육 등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	20	20	18	16	14	12		
총 계	80							

회의 소집 통지서

수 신:

한국가스기술공사 제 회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 장 소
- 3. 의 안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3호]

제 회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회의록

안 건 명	출석위원	
제 안 자	결석위원	
일 시	간 사	
1 >	서 기	
장 소	배 석 자	
회의결과	의 결	
의 커슨 커 () 	부 결	

주요 내용(회의 경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명 날인함

		년	월	일
위원	발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4호]

서면 결의서

안 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의거 위의 안건을 서면결의 방식으로 처리한바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위원서명	서면결의체택		안 건	비고	
위전시병 	동 의 부동	의	찬 성	반 대	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년 월 일

간 사 (인)

※ 위 건을 다음과 같이 확인함.

가. 원안의결

나. 별지와 같이 수정의결

다. 보 류

라. 부 결

년 월 일

한국가스기술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인)